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주식회사 유엔텔 귀중

1. 본 각서인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625, 1624-1에 관광호텔 1개동(이하 "본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로서 박 (이하 "차주"), 대주로서 주식회사 유엔텔(이하 "대주"),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메! !,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모닝 (이하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2017년 03월 체결된 대출약정(이하 그 수정,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 각서 합니다.



2. 본 포기각서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는, 본 포기각서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대출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3. 본 각서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주가 본 각서 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건 공사의 시공권(공사도급계약상의 지위 기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본 각서 인이 공사 수급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일체의 권리 및 권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주가 지정하는 자(이하 "대체 시공사")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본 각서 인은 대주의 청구가 있는 날 즉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시공권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권한, 법적 지위 등(이하 "시공권")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대주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공사현장을 명도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 각서 합니다.

(가) 특별한 사유없이 차주가 일(1)개월 이상 공사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나)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차주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다) 시공사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시공사가 금융계약 및 사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시공사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아 본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기타 사업계약에서 정한 시공사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본 각서 인은 위 3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사업의 시공권 이전에 필요한 각종 절차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대체 시공사가 원활하게 본건 공사의 업무를 인수, 인계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업무인수인계를 할 것임을 확인, 각서 합니다. 또한, 본 각서 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각서인과 직

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들의 유치권을 해소 할 것임을 확인, 각서 합니다.

5. 본 각서 인은 본 포기각서에 따른 시공권, 유치권의 포기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 소(가압류, 가처분 등 포함)제가, 기타 민원 등 본 건 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 각서 합니다.

6. 시공사는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 될 때까지 공사비 미지급,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본 건 사업부지 또는 본건 건물(건축중인 건물, 미등기 건물을 포함함)에 대하여 유치권, 소유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으며 시공권 및 유치권 초기사유 또는 본건 사업부지 또는 본건 건축물의 처분사유 발생 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수급인들의 유치권을 해소 할 것임을 확인, 각서 합니다.

7. 본 각서 인이 본 항에 따라 시공권을 포기 및 상실하는 경우, 대주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기성을 공사중단 당사의 기성으로 할 것임을 확인, 각서 합니다.

8. 본 각서 인은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의 권리가 양도되는 경우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본 각서가 효력

2017년 03월 14일

각서인

주식회사 메트로

대표이사 권

